

서울특별시 금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2년 3월 25일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년 3월 17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2년 3월 17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3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2년 3월 25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행정문화국장 송오섭)

가. 제안이유

- 2021. 5. 18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산업재해 예방활동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, 제2조)
-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조례의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및 예방 활동 등에 관한 사항(안 제6조, 제7조)

-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사항(안 제9조부터 제12조)
-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13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김수

나. 검토의견

○ 제정 취지 검토

- 본 제정안은 금천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강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는데 기여 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하였음.

○ 주요 제정 내용

-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기술하였고
- 안 제4조에서 적용대상을 구 및 소속 행정기관, 공단, 출자·출연기관,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환경 취약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체의 노동자 및 그 사업주로 명시함.
-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.
- 안 제9조와 제13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,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 하고 있음.

○ 종합 검토의견

- 본 제정안은 금천구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노동자의 생명·안전·건강·보건 향상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시의 적절한 조례안이라 보이며

-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은 영세사업장 밀집지역 및 위험 업종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며,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이 최대한 증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